[일련번호: 1]

경 기 도 체 육 회

주 의 조 치

[제　　목] 규약 및 기타규정 관리 미흡

[소 속 기 관] 경기도스쿼시연맹

[내　　용]

1. 업무개요

경기도스쿼시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는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스쿼시연맹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이에 따라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제·개정하여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연맹 「규약」 제53조(규정 제·개정)에 따르면 연맹은 본회의 정관과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본회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52조[1] 및 제53조[2]에 따라 규약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연맹 규약의 미현행화

본회는 경기도종목단체의 조직운영에 필수요소인 규약 개정을 독려

1) 본회「경기도종목단체규정」제52조(규약변경) ① 도종목단체가 규약을 변경할 때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의결하고 본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회가 도종목단체의 승인에 앞서 이에 대한 개정 또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종목단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본회「경기도종목단체규정」제53조(규약 등 제정·개정) ① 도종목단체는 이 규정에 따라 규약을 제정·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에 해당 도종목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종목단체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정·개정 한다.
③ 도종목단체의 규약 및 규정(사무국 관련 규정 포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하기 위해 본회 정관 및 제규정 사항에 대해 안내[3]하여 경기도종목단체의 규약 및 제규정을 신속하게 개정하고 각 단체 운영에 규정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있다.

그러나 연맹은 20**년도 *월 규약을 제정한 이후 현재까지 「규약」에 대한 현행화(최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상위기관과 해석 및 적용에 오류발생이 우려되며, 기타 제규정을 통해 각종 사업 및 사무국 운영상에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문서관리 규정, 민원처리 규정,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등 기타 규정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연맹 운영이 불가한 실정으로 판단된다.

나. 연맹 각종 위원회 규정 운영 미흡

연맹은 「규약」 제37조부터 제39조[4]를 두어 각종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해당 조항의 경우 위원회의 설치근거, 위원회 겸임금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 자격, 위원의 제척 및 회피 등 그 운영에 기본적인 사항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고 있으나 20**년도 *월 이후 현행화(최신화) 하지 않고 있어 2024년도 현재까지 다수의 개정절차를 거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과 해석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연맹은 규약 및 본회 규정에 따라 연맹의 규약을 개정하고 연맹의 사업 및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각종 제규정을 제정하여 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하여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

3) 본회 종목육성팀-8(2023.1.2.)호 및 종목육성팀-47(2024.1.9.)호

4) 연맹 「규약」 제37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제38조(스포츠공정위원회), 제39조(위원회의 운영 등)

[조 치 사 항] 경기도스쿼시연맹 회장은

「규약」에 대하여 본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 및 「대한스쿼시연맹 정관」 등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종목의 특성 및 여건에 맞는 「규약」을 절차에 맞도록 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규정 및 지침을 제·개정하여 본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

경 기 도 체 육 회

주 의 조 치

[제　　목] 총회 구성 및 운영 미흡

[소 속 기 관] 경기도스쿼시연맹

[내　　용]

1. 업무개요

경기도스쿼시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는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스쿼시연맹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이에 따라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대의원총회 관련 그 구성과 절차에 대하여도 「규약」 및 본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그 적용과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연맹은 「규약」 제7조 제1항 각호를 통하여 제5조 제1항에 따른 ‘시군 스쿼시 단체의 장’과 제5조 제3항에 따른 ‘경기도규모연맹체의 장’을 연맹의 대의원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대의원 구성에 대하여 예외 사항을 두고 있는데 동조 제1항 제3호[1]의 경우 대의원수가 7인 미만으로 총회 구성에 곤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의원외 등록팀과 스쿼시동호인조직을 포함하여 총회 구성이 가능함을 명시하여 총회 구성 및 운영의 공백을 방지하고 있다.

---

1) 「규약」 제7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본 연맹의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3. 시·군 스쿼시 단체 대의원 수가 7인 미만으로 총회 구성에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팀과 스쿼시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또한 연맹은 규약 제8조에서 총회의 소집 및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동조 제5항[2]의 경우 대의원의 대리인 자격 및 그 권한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6항[3]에서는 대리인 출석에 대한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연맹은 총회의 구성과 소집, 그 대리인의 출석에 대하여 규약 제7조 및 제8조를 준수하여 적법한 총회를 운영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협회는 총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나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견되었다.

연맹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총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면서 대의원의 대리인으로 판단되는 자의 출석이 확인되었고, 그 대리인은 각 총회의 의결에 관여한 바 있다.

[표1] 최근 3년간 총회에 참석한 대리인 출석 현황

순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소 속	직 위	성 명	소 속	직 위	성 명	소 속	직 위	성 명
1	고양시 스쿼시연맹	**사무국장**	김00	고양시 스쿼시연맹	**사무국장**	김00	고양시 스쿼시연맹	**사무국장**	김00
2	안양시 스쿼시연맹	**전무이사**	이00	군포시 스쿼시협회	**사무국장**	이00	군포시 스쿼시협회	**사무국장**	이00
3	군포시 스쿼시협회	**사무국장**	이00	구리시 스쿼시연맹	**사무국장**	서00	양평군 스쿼시연맹	**사무국장**	이00
4	구리시 스쿼시연맹	**사무국장**	서00	양평군 스쿼시연맹	**사무국장**	이00	안양시 스쿼시연맹	**전무이사**	이00
5	양평군 스쿼시연맹	**사무국장**	이00	안양시 스쿼시연맹	**전무이사**	이00	파주시 스쿼시연맹	**사무국장**	안00
6	-	-	-	파주시 스쿼시연맹	**사무국장**	안00	-	-	-

「규약」 제7조에 의하면, 연맹의 대의원의 경우 '시·군 스쿼시 단체의 장'과

2) 「규약」 제8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⑤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3) 「규약」 제8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⑥ 제5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전까지 본 연맹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경기도규모연맹체의 장’으로 정해져 있고, 제8조에서는 총회의 소집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동조 제5항에서는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부회장’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도록 하여 대리인에 대한 자격 또한 동 규약에 명시하고 있다.

또한, 연맹에서 제출한 수감자료에 따르면 연맹의 경우 대의원이 아닌 연맹 회장(전○○) 및 사무국장(박○○)을 제외한 10명의 시·군 스쿼시연맹 회장이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규약 제7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스쿼시 단체 대의원수가 7인 미만으로 총회 구성이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보기 힘들어 본회의 승인을 통한 등록팀의 장을 대의원으로 구성하였다고도 볼 수 없는 것이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연맹은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2023년 총회를 개최하면서 규약 제7조의 각호 대의원 및 제8조 제5항에서 정한 대리인이 아닌 자(사무국장, 전무이사)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되어, 당시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 할 수 없다.[4)]

[조 치 사 항] 경기도스쿼시연맹 회장은

연맹 「규약」에 의거하여, 향후 총회 구성 및 운영시 관련 조항을 준수하시어 대의원의 대리인 자격 및 출석 등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가사, 사무국장 및 전무이사가 대의원의 대리인으로서 인정될 여지가 있다 할지라도, 규약 제8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제6항에 따라 총회 3일전까지 연맹에 서면으로 각 대의원이 지명한 대리인의 참석에 관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에도 대리인 출석에 대한 통보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이 또한 절차 위반으로 봄이 타당함.

[일련번호: 3]

경 기 도 체 육 회

주 의 · 권 고 조 치

[제　　목] 각종 위원회 운영 미흡

[소 속 기 관] 경기도스쿼시연맹

[내　　용]

1. 업무개요

경기도스쿼시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는 「경기도스쿼시연맹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 따라 해당 종목운동을 도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도민체력을 향상케 하는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 규약 제4조의 각종사업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써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근거와 그 구성 등에 대하여 규약에 명시하여 운영하고 있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연맹은 「규약」 제37조부터 제39조의 조항을 두어 각종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규약에 명시하고 있다.

「규약」 제37조는 각종 위원회를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정의하고 있고, 이사회의 의결로 설치하도록 하여 설치 근거와 절차를 동 조항에 명시하였다. 특히 동조 제3항은 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원회를 통해 각종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특정인의 각종 사업에 대한 관여 방지 및 의결 사항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규약」 제37조 제6항에 따라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상위기관의 해당 위원회 규정을 준용하여 연맹이 별도로 정하고 그 기준을 준수하여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연맹은 「규약」 제37조부터 제39조의 조항을 두어 각종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본회에 제출한 「2024년도 정기종합감사 수감자료」에 의하면 연맹은 현재 6개(스포츠공정위원회, 대회운영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선수위원회, 심판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하여는 「규약」 및 관련 제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가. 위원회 위원 겸임 금지조항 위반

「규약」 제37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37조 제4항[1] 또한 연맹 「규약」과 동일하게 위원의 다른 위원회 위원 겸임을 제한하고 있다.

연맹에서 제출한 수감자료에 의하면 6개의 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스포츠공정위원회 5명과 각 위원회별 3~4명의 위원이 구성되었는데, 이중 3명의 위원이 각각 2개의 위원회에 중복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표2] 위원회 겸임 현황

순	위원명	소속 위원회명	비 고
1	김00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대회운영위원회(위원장)	2개 위원회 겸임
2	김00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 경기력향상위원회(위원)	〃
3	이00	경기력향상위원회(위원), 심판위원회(위원)	〃

1) 본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37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④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특히, 「규약」 제38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체육관계단체의 임직원으로 근무중인자의 경우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위원 5명 모두 연맹의 임원임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위원의 다른 위원회의 겸임 제한규정 위반 및 「규약」에 명시된 자격 기준을 위배한 위원회 구성 · 운영에 대하여 향후 관련 조항을 준수한 위원회 위원의 구성 관련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다.

나. 위원회 운영 규정 미설치

「규약」 제37조 제6항에서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상위기관의 해당 위원회 규정을 준용하여 연맹이 별도로 정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현재 운영중인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경우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중에 있으나, 그 외 5개 위원회의 경우 별도의 운영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종 위원회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원, 참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것이 보통이나 5개 위원회의 경우 의사 및 의결정족수 등에 관한 규정 또는 조항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당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유효여부는 해석의 여지가 존재한다 할 것이며, 그 외 각 위원회 기능 및 위원의 구성, 절차 등의 미비로 향후 각종 민원 및 법적 쟁송 대상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판단되는 바, 연맹은 의결사항에 대한 적법성 확보를 위해 별도의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다. 위원회 위원 구성 미흡

1) 위원회의 위원수 구성

「규약」 제39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 따르면 각 위원회의 위원은 별도의 최소 구성의 제한 없이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37조 제3항[2]에서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한한 '7명 이상'이라고 규정하여 각 위원회의 최소 구성 위원의 수를 정하고 있고, 본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의 경우에도 제4조 제1항 제3호[3]에서 위원 7명 이상(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을 최소 구성 위원수로 명시하고 있다.

연맹에서 운영중인 스포츠공정위원회를 비롯한 6개의 위원회의 현재 구성 위원의 수를 살펴보면, 스포츠공정위원회 5명, 대회운영위원회 · 경기력향상위원회 · 선수위원회 · 생활체육위원회가 각각 3명, 심판위원회가 4명으로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는데, 「규약」 제39조 제3항에 비추어 적법하지 않다. 할 수 없겠으나, 최소의 구성원 수가 명시되지 않아 이는 임의적인 위원회 구성 및 의결 등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이며, 본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54조[4]에 따라 동 규정에 맞추어 규약상 위원 구성의 수에 대한 최소 구성의 수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

2) 본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37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③ 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상(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3) 본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3명 이하
3. 위원 7명 이상 13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4) 본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54조(규정의 해석) ① 이 규정은 도종목단체 규약에 우선하며, 도종목단체 규약을 이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도종목단체의 규약과 이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② 도종목단체가 본회의 정관, 이 규정 및 그 밖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분명하지 않은 사항은 본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2) 위원회 위원 구성 자격

각종 위원회는 「규약」 제37조 제1항 및 본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37조 제1항[5]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6]에 따라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봄이 타당하며,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7]에 따라 위원회의 목적과 활동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각 위원회의 위원이 위촉되어야 함에도, 연맹의 위원회의 경우 6개 위원회 총 21명(겸임 위원 포함)의 위원중 20명 즉, 95%이상이 연맹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구성원의 현직을 살펴보면 전업주부, 업체대표, 소방공무원, 마트대표, 미용업, 공인중개사 등 연맹 사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가진자로 보기 힘들어 그 설치의 목적인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전문적인 자문이 가능할지 여부가 의심되는바 향후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재검토 후 위원회 설치 및 목적, 그 취지에 따라 규정을 제정하고 준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맹은 「규약」 제38조 제2항과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4조 제3항에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자격을 각 호를 통하여 명시하였으나, 그 자격사항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확인되었다.

[표3] 연맹 「규약」 및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상 위원자격

「규약 」 제38조 제2항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4조 제3항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종사한 사람	좌동
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스포츠 또는 법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3년이상** 근무한 사람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스쿼시 종목과 관련하여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본회 「가맹경기단체규정」 제37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도종목단체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대회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선수위원회, 심판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한다.

6) **본회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37조에 따라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7) **본회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위원의 위촉 등)** ① 위원은 위원회의 목적과 활동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자로서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한다.

라. 각종 위원회 개최 정상화 방안 마련

연맹은 「규약」 제37조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비롯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서 대회운영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수감범위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위원회 개최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원회의 경우 연맹의 각종 사업수행과 목적달성을 위하여 설치되었다고 할 것이나, 최근 3년간 그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보아 그 설치 목적에 비추어 위원회의 정상적인 역할 수행이 이루어졌는지 의심된다.

[조 치 사 항] 경기도스쿼시연맹 회장은

위원회 구성시 「규약」 및 본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등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규약」 개정 및 각종 위원회의 세부 운영 관련 기준 마련을 위한 운영 관련 규정을 조속히 제정*하여 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의)**

*** 규약 및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 제개정 조치 후 본회 공정감사실로 결과 제출**

'이사회의 자문기구'로서 설치된 각 위원회에 설정된 기능과 목적에 따라 연맹 사업수행의 원활한 절차 진행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각 위원회의 적극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

[일련번호 : 4]

경 기 도 체 육 회

주 의 조 치

[제　　목] 사무국 운영 부적정

[소 속 기 관] 경기도스쿼시연맹

[내　　용]

1. 업무개요

경기도스쿼시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는 「규약」 제50조(사무국의 운영 등)에 따라 사무국의 구성,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규정 및 지침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각 호를 통하여 포함하여야 할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연맹은 동 조항을 기반으로 하여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마련하여야 하고 연맹규약 및 제규정에 기초하여 단체를 운영하여야 한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연맹은 「규약」 제49조(사무국)에 근거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과 직원을 두어 운영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사무국장과 직원에 대한 직무 및 자격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50조를 별도로 두어 연맹의 사무국 운영에 대한 필요 사항들에 대하여 본회의 규정 및 지침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50조[8] 또한

8) 체육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50조(사무국의 운영 등) 도종목단체는 사무국의 구성,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본회의 규정 및 지침(직제 표준화 지침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야 하며, 아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 제정 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본회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1. 사무국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가.~라. "생략"
2. 모든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3.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도종목단체 사무국운영시 사무국의 구성,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본회의 규정 및 지침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야 하며, 그 필요사항들에 대하여는 동조 각 호를 통하여 명시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연맹은 사무국 운영시 「규약」 및 본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에 따라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관련 규정 및 지침등을 제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나, 현재 연맹은 「규약」외 별도의 규정 및 지침등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다.

다만, 연맹 「규약」 제50조 및 본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50조는 '별도의 규정 제정 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체육회(본회)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고 규정하여 별도의 제정 없이 본회 관련 규정의 준용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연맹의 경우 규약이 제정된 2016년 이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장기간 사무국 운영과 관련된 규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어 기준성과 체계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조 치 사 항] 경기도스쿼시연맹 회장은

연맹 「규약」 및 본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에 의거, 조속히 사무국 운영과 관련된 규정 및 지침 등(인사 및 복무, 회계규정, 문서관리규정 등)을 제정하여 그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정 제정사항에 대하여는 절차 완료 후 증빙자료(이사회 심의자료 등)와 함께 본회 공정감사실로 조치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

경 기 도 체 육 회

주 의 조 치

[제　　목] 회계처리 부적정

[소 속 기 관] 경기도스쿼시연맹

[내　　용]

1. 업무개요

경기도스쿼시연맹(이하 “연맹”라 한다.)는 「경기도스쿼시연맹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및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사업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회계처리 절차가 있어야 한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본회 사업별 지침 및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경기도 회계관리 규칙”이라 한다.), 「지방회계법」 제5조(지방자치단체 회계의 원칙)등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는 회계처리가 신뢰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해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또한 제15조(계약의 체결) 제3항[9]에 의거, 20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 훈령 별지 제40호서식, 제40의1호서식, 제41호서식 또는 제41의1호서식을 사용해야 하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에서는 계약 담당자가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분할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

9)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5조(계약의 체결)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 계약의 내용에 따라 훈령 별지 제40호 서식, 제40의 1호서식, 제41호서식 또는 제41의 1호서식을 사용한다. 다만, 훈련 별표 4의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훈령 별지 제37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연맹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지침이나 관련법령을 지키지 않고 보조금을 집행하는 등 회계처리 절차를 지켜야 함에 불구하고 품의서, 결의서 등 체계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하고 지출에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를 증빙하여 지출에 임해야 하지만 집행이 어떤 증빙으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었다.

[표1] 경기도스쿼시연맹 지출절차(품의서, 결의서) 확인불가 사업

년도	사 업 명	금액(원)	비고
2021	*****	*,***,000	
	***** *	*,***,000	
	***** **	*,***,000	
	***** ***	*,***,000	
2022	*****	*,***,000	
	***** *	**,***,000	
	***** **	*,***,000	
	***** ***	*,***,000	
2023	*****	*,***,900	
	***** *	**,***,000	
	***** **	*,***,000	
	***** ***	**,***,730	
	***** ****	*,***,560	
	***** *****	*,***,000	

또한 지출의 목적과 증빙 확인이 빈약하고 지출이유가 의심되는 항목이 발견되는 등 보조금 집행에 투명성이 의심되는 집행이 확인되었다.

[표2] 경기도스쿼시연맹 보조금 부정적 운영 의심 현황

년도	사 업 명	금액(원)	지출내역	업체명
2023	제104회 **** *	*,000	현수막	영***
	제104회 **** *	*,000	사무용품	영***
	2025 **** **	*,000	기타운영	영***

[조 치 사 항] 경기도스쿼시연맹 회장은

보조금 관련 법령 및 체육회 회계규정 등을 근거로 청렴한 보조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계약 및 회계처리에 있어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보조사업 전반적으로 기록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21년~’23년 보조사업 전체의 지출증빙을 전면검토하여 부족한 서류의 보강을 실시하여 본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

경 기 도 체 육 회

개 선 조 치

[제　　목] 기록물(문서) 관리 소홀

[소 속 기 관] 경기도스쿼시연맹

[내　　용]

1. 업무개요

경기도스쿼시연맹(이하 “연맹”라 한다.)는 「경기도스쿼시연맹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 따라 모든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해야 한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연맹 「규약」 제50조(사무국의 운영 등)[10]에 따라 모든 기록물을 전자적 관리하고 보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록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예산지원도 함께 진행하여 연맹의 모든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를 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

10) 제50조(사무국의 운영 등) 본 연맹은 사무국의 구성,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하여야 하며, 아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 제정 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체육회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1. 사무국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가. 직원의 신분보장
 나. 외부 인사 3인 이상이 포함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인사위원회 구성
 다. 채용시 공개채용 원칙 및 체육인 출신에 대한 기회제공
 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직원에 대한 직위해제
2. 모든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연맹은 보조금 및 자체비 등 기록물 관리를 개인 PC, 문서24를 통해 관리하고 있고 기록물을 경기도체육회관 9층 사무실에 일부 보관하는 등 기록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조 치 사 항] 경기도스쿼시연맹 회장은

연맹의 사무국이 경기도체육회관에 입주해있는 만큼 본회에서 운영하는 전자문서시스템을 2024년 하반기(7월)부터 반드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기록물이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본회 공정감사실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

경 기 도 체 육 회

권 고 조 치

[제　　목] 회계재정보증보험 가입 부실

[소 속 기 관] 경기도스쿼시연맹

[내　　용]

1. 업무개요

경기도스쿼시연맹(이하 “연맹”라 한다.)는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스쿼시연맹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으로 정하고 있고, 규약 제40조부터 제48조까지 재산 및 회계 관련 조항을 두어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회계법 제50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제1항은 회계관계공무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11]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부여와 그 위반하는 회계관계행위를 방지하고 있다.

---

1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법에서 “회계관계직원”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생략”
2.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사람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3.~4. “생략”

또한,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회계규정」 제11조[12]는 ‘회계관계직원’ 등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지방회계법」 제50조 제1항과 동일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연맹는 현재 회계관련 규정을 제정하지 않아 회계관계직원에 대한 구분 및 지정이 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회계재정보증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수입 및 지출 등 회계 관련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조 치 사 항] 경기도스쿼시연맹 회장은

체육회「회계규정」을 준용하는 등 연맹 운영과 관련한 회계 규정을 조속히 제정하여 그에 따른 회계담당의 범위를 구분 · 지정하시고, 회계관계직원에 대한 ‘재정보증보험’을 필히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체육회 「회계규정」 제11조(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직원 등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